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578 발의연월일: 2023. 3. 13.

발 의 자:유기홍·김영호·김철민

김정호 · 서동용 · 도종환

안민석 · 민형배 · 강민정
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각 시·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,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 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 상담·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53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지원"을 "법률상담 및 보상지원"으로 한다.

2의3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5 조제5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

제5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 · 보상지원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① 공제회	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①		
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			
한다.			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2의3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		
	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		
	법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교		
	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		
	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		
	에 관련된 업무	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	7		
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<u>지</u>	<u>법</u>		
<u>원</u> 에 관한 사업	률상담 및 보상지원	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5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	제53조(기금의 용도) ①		
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의2.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・		
	보상지원 사업		
5. •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